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87
----------	-------

발의연월일 : 2025. 7. 1.

발 의 자 : 김미애 · 김기현 · 강승규
이종배 · 김 건 · 송석준
김재섭 · 권영진 · 김정재
최수진 · 김민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9월 기준 전국 94개 의료기관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하여 이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어린이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에 어린이환자를 진료하는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른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현황 등 소아진료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에 대하여 야간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상시 개방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에 제1항에 따른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어린이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에 어린이환자를 진료하는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른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현황 등 소아 진료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u> <u>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에 대하여 야간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상시 개방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u>④ 국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u>

따른 도심융합특구에 제1항에
따른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